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미래교육과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6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영등포구의회의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신길1동 밤동산 지역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 신길1동 밤동산 지역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마을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지식문화 습득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 도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됨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신길1동1-10번지의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02㎡ 규모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도서관, 일반도서관, 북카페 등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동 시설의 건립을 위해 2019. 5월 마을도서관 조성 가능시설물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8월 서울형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20억원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상 건물 및 부지 조사를 실시하여 2019. 9월 대상 물건을 확보한 상태임.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 총 사업규모는 19억 6,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전액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서 및 사무기 등 구입비 8천만원, 건물매입비 14억 8천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3억 7백만원, 설계감리 등 용역비 및 제세금 등 8천 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 신길1동 밤동산 지역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 생활권내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

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